

대학혁신본부 운영규정

제정 2023. 02.

개정 2024. 04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한다) 대학혁신본부(이하 '혁신본부'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혁신본부는 본교의 고등교육평가센터와 ESG센터의 관리 및 정부재정지원사업의 계획 수립과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며, 총장을 보좌한다.(개정 2024.04.09.)

- 고등교육평가센터를 통한 대학의 주요성과 관리 및 통계분석
- ESG센터를 통한 대학의 사회적책임과 가치경영 지원
- 정부재정지원사업 지원 및 관리를 위한 기획·평가·개선
- 기타 혁신본부 업무수행을 위한 연구 및 의견수렴

제3조(본부장) ①대학혁신본부장은 본교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대학혁신본부장은 혁신본부를 대표하여 혁신본부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3조의2(조직) ①혁신본부는 고등교육평가센터, ESG센터, RISE혁신지원센터를 두며,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.(개정 2024.04.09.)

②정부재정지원사업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학혁신위원회, 재정지원사업 운영위원회 및 재정지원사업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③혁신본부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분부장을 둘 수 있다. 부분부장은 혁신본부장 유고시 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지원인력)(개정 2024.04.09.) ①혁신본부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연구교수,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- 고등교육평가 지원을 위한 업무
- ESG 구현을 위한 업무
-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대학 혁신을 위한 업무
- 정부재정지원사업 지원 및 관리 업무
- 기타 대학혁신본부 관련된 제반 업무

②연구교수는 관련분야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로 한다.

③연구원은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로 한다.

④보조연구원은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다.

제5조(전문위원) 혁신본부는 수행하는 전문 연구분야에 따라 본교 교원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6조(대학혁신위원회) ①혁신본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대학혁신위원회는 총장과 혁신본부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 부위원장은 혁신본부장으로 하며,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.(개정 2024.04.09.)

③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대학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고등교육평가를 위한 주요성과 및 통계분석 보고에 관한 사항
- 2. 대학의 사회적책임과 가치경영을 위한 보고에 관한 사항
- 3. 정부재정지원사업을 위한 보고에 관한 사항
- 4. 기타 혁신본부 업무수행을 위한 제반 연구에 관한 사항

제6조의2(재정지원사업운영위원회) ①혁신본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사업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재정지원사업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둔다.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.(개정 2024.04.09.)

③재정지원사업운영위원회는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.(개정 2024.04.09.)

④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재정지원사업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정부재정지원사업의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2. 정부재정지원사업 간 이해충돌 및 중복방지에 관한 사항
- 3. 정부재정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보고에 관한 사항
- 4. 기타 정부재정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제반 연구에 관한 사항

제6조의3(재정지원사업평가위원회) ①혁신본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사업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재정지원사업평가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둔다.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.(개정 2024.04.09.)

③재정지원사업평가위원회는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(개정 2024.04.09.).

④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재정지원사업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실행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
- 2.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지표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
- 3. 정부재정지원사업의 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
- 4. 기타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를 위한 제반 연구에 관한 사항

제7조(운영) 혁신본부장은 혁신본부의 주요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총장에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.

제8조(운영세칙)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혁신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.